

## 韓國의 辯護士制度

——辯護士 法制를 中心으로——

黃 仁 喆\*

### 1. 問題提起

韓國의 辯護士制度는 우리 固有의 制度로서 傳承된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創案해낸 制度도 아니다. 外來의 制度이다. 그것도 스스로의 主體的인 決斷에 의하여 導入한 것이 아니라 日帝의 韓國併吞過程에서 司法權侵奪의 한 方便으로 導入된 制度인 것이다. 制度의 形式은 導入되었으나 制度의 精神과 傳統까지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그뿐 아니라 制度를 가꾸고 發展시킬 意志와 努力도 不足하였고 무엇보다도 定着할 土壤도 메마르기 이를 데 없었다.

辯護士制度는 民主社會의 土壤 위에서만 確固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制度이다.

政治와 權力の 民主化가 이룩되고 民主司法制度가 確立되지 않고서는 辯護士制度라 하여 따로 發展할 수 없음은 勿論이다.

우리 建國의 理念이요, 國民 모두의 熱望인 民主主義, 法治主義가 그동안 수많은 受難을 겪었고 특히 70年代 以來 그 危機를 맞고 있음과 함께 70年代 以後 辯護士에 대한 國民의 認識이나 興望이 점차 衰退하여 가고 그 地位 또한 沈滯一路에 있음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다.

現實狀況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辯護士制度를 보다 民主的이고 合理的으로 改善發展시켜 法이 支配하는 社會, 나아가서는 民主社會의 實現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意志와 努力은 果然 充分하였던가?

우리가 韓國辯護士制度의 本質을 다시 되새겨 確認하고 過去와 現在를 되돌아 보고 反省하며, 바람직한 未來像을 設計하여 보려는 理由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 2. 辯護士制度의 本質

#### (1) 辯護士

辯護士는 公共성을 지닌 法律專門職인 동시에 司法機關의 一部이다.

\* 辯護士

첫째로, 專門職이다. 專門職 즉 profession은 專門的인 知識을 가지고 從事하는 職業으로서 組織과 學識에 뒷받침된 技術의 研鑽 및 公共에 대한 奉仕精神을 그 特性으로 하며, 收入 그 自體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한다.

둘째로, 法律專門職이다. 훌륭한 教育과 實務的 訓練으로 잘 다듬어진 法律의 專門知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法律事務가 辯護士의 職域에 包含됨은 물론이다.

셋째로, 公共性을 지닌 法律專門職이다. 高度의 專門的 知識의 活用에는 社會的 責任이 隨伴되어야 한다. 따라서 辯護士는 民主的 基本秩序의 確立과 法이 支配하는 社會의 實現을 그 使命으로 한다.

네째로, 司法機關의 一部이다. 辯護士가 갖는 公共性의 結果로서, 國民의 法의 生活의 安定을 保障하고 法을 통한 社會正義를 實現하며, 國家機關에 대하여 法의 正當한 執行을 要求하고 監視하는 機能과 責任을 지는 民間司法機關이다.

## (2) 辯護士團體

辯護士의 專門職인 特性은 그 組織에서 나타나며, 組織을 通하여 司法機關으로서의 機能과 責任을 다 할 수 있게 된다. 「辯護士 業務에 從事하는 사람의 組織으로 辯護士會는 그들의 職業生活에 있어서 不可缺의 것이다. 公衆에 대한 奉仕의 精神이 發展維持되고 또 여러 重大한 公的 奉仕가 效果의으로 이룩되는 것은 오로지 辯護士의 組織이 있기 때문에 可能한 것이다. 高度의 學識을 保證하는 高度의 教育的 水準을 維持하고 實務의 資格賦與時에 必須條件인 品性의 높은 水準을 保持하고 또 依賴者와 裁判所와의 雙方間에서 倫理的 行動의 高度의 水準을 形成하고 維持할 수 있는 것은 辯護士會이지 個個의 辯護士가 아니다. 公衆은 複雜한 社會的, 經濟的 秩序속에 있어 司法裁判機構의 一部分으로서 잘 組織된 法曹을 갖는 것에 깊은 利害를 갖는 것이다」고 한 「로스코 파운드」의 말이 辯護士團體의 本質을 잘 表現하여 주고 있다.

辯護士團體는 利害調節의 中間集團이고, 正當한 法執行의 監視集團이며, 法의 支配를 實現할 壓力團體인 것이다.

따라서 辯護士團體는 民主的이고 自主的인 組織이어야 하고 自治와 自律의 存在이어야 한다.

## 3. 韓國 辯護士制度의 沿革

### (1) 舊韓國의 辯護士制度

#### (가) 光武辯護士法

韓國의 辯護士制度가 처음으로 創設된 것은 1905年(光武 9年) 11月 8日 乙巳保護條約의 締結과 때를 같이하여 公布된 法律 第5號 「辯護士法」에서 비롯한다.

甲午更張 卽後인 1895年 法律 第1號「裁判所構成法」에 依하여 近代的 意味의 裁判制度가 導入되고 判事와 檢事의 官職이 創設되었지만 辯護士制度는 誕生을 보지 못하였었다. 그 10年後 司法權의 移讓協定이 包含된 乙巳條約의 締結과 더불어 「辯護士法」이 制定되고 이어 「辯護士試驗規則」과 「辯護士記錄規則」이 公布되어 우리나라에도 辯護士制度가 誕生하게 된 것이다.

이 光武 辯護士法이 公布된 뒤 1905년에 洪在祺, 李冕宇, 丁明燮 3人이 辯護士 登錄을 하였고, 1907年 「漢城辯護士會」가 發足하였는 바, 이 세 분과 漢城辯護士會가 우리나라 辯護士와 辯護士會의 元祖인 셈이다.

#### (나) 隆熙辯護士法

1907年 丁未七條約의 締結로 裁判所構成法이 改正되어 大法院, 地方裁判所, 區裁判所 등이 設定되고 裁判所의 判事, 檢事に 日本人이 大擧 任命됨에 따라 辯護士法도 日本辯護士法(1893年)과 同一하게 1909年 4月 26日 法律 第18號로 改正되었다. 이에 따라 辯護士試驗制와 法官銓衡試驗制를 統合한 「司法試驗規則」이 公布되어 辯護士資格이 司法試驗合格者로 變更되고 辯護士 名簿記錄이 登錄으로 修正되었다. 이 法에 의하여 京城辯護士會가 發足되었다.

#### (다) 統監府辯護士規則

己酉覺書에 의하여 韓國의 司法權을 強奪한 日帝統監府는 1909年 10月 「統監府辯護士規則」을 公布하여 隆熙辯護士法은 5개월의 短命에 그쳤으나 그 內容은 韓國에서 開業한 日本人 辯護士에게도 適用되는 것을 재하고는 隆熙辯護士法과 같은 것이었다. 이 規則에 의하여 韓國人 辯護士會로 「京城第二辯護士會」와 日本人 辯護士會로 「京城第一辯護士會」가 組織되었다.

### (2) 日帝下의 辯護士制度

#### (가) 朝鮮總督府辯護士規則

韓日合併후 1910年 12月 15日 「辯護士規則」이 制令 第12號로 公布되었다. 內容은 統監府 辯護士規則과 同一하다. 이 規則施行後에도 京城第一과 京城第二의 두 辯護士會가 그대로 存續하다가 1919年 兩會의 統合을 試圖하였으나 會長選舉에서 韓國人 張燾가 當選되자 日本人들의 協力拒否로 1920年 「京城朝鮮人辯護士會」와 「京城內地人辯護士會」로 分立되었다.

#### (나) 朝鮮辯護士會

1936年 4月 17日 制令 第4號로 「朝鮮辯護士令」이 公布되어 同年 6月 1日부터 施行되었고 從前의 朝鮮辯護士規則은 廢止되었다. 日本의 1893年 辯護士法이 廢止되고 1933年 新辯護士法이 制定되자 이 新法에 따라 制定된 것으로서 이 朝鮮辯護士令에서 辯護士의 職務權限에 관한 規定과 職務上의 義務規定 등이 비로소 新設되었다. 이 令은 韓國人 辯護士단으로 會를 設立할 수 없도록 되어 日本人들이 京城辯護士를 創設하였으나 韓國人의 加入拒否

로 별도로 京城第一辯護士會가 設立되었으나 결국 1938年 京城辯護士會로 統合되고 말았다.

### (3) 美軍政下의 辯護士制度

#### (가) 辯護士資格賦與와 辯護士會에 대한 命令

8·15解放으로 美軍政이 實施된 뒤 1945年 11月 2日 軍政命令 第2號 「法律의 存續」에 의하여 朝鮮總督府가 公布한 朝鮮辯護士令도 그 効力이 存續되었으나 美軍政法務局은 부족한 法曹人力을 補充한다는 구실 아래 1945年 11月 14日 法務局令 第1號로 「辯護士資格賦與」를 公表하고 既有資格辯護士에게 資格을 確認하여 주는 외에 韓國人과 美國人의 準資格者에게 辯護士資格을 賦與하여 주게 되었다. 이 指令에 따라 辯護士資格을 賦與받은 準資格 辯護士는 韓國人이 62名, 美國人이 102名 合計 164名에 이르는 바, 解放當時인 1944年 12月 現在 南北韓을 合한 韓國人辯護士는 244名이고 南韓만은 167名이었음에 비하여 얼마나 많은 準資格辯護士가 量産되었는지 알 수 있다. 在野 法曹界의 強力한 反對를 불러 일으켰음은 물론이다.

美軍政廳法務局은 또한 1945年 11月 19日 法務局令 第4號로 「辯護士會에 관한 命令」을 發하여 朝鮮辯護士會를 創立하게 하고 會長은 大法院長이 兼職하게 하였으며 判事는 全員自動적으로 會員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朝鮮辯護士會 中央協議會가 構成되고 종전의 京城辯護士會는 朝鮮辯護士會 서울分會가 되었다. 이 命令은 辯護士 資格있는 判事를 辯護士會의 會員이 되게 한 점에서 美國式 辯護士會의 構成을 試圖한 듯하나 大法院長의 會長兼職 때문에 辯護士들의 強力한 反對에 부딪혔었다.

#### (나) 辯護士法

그 후 1948年 7月 1日 美軍政法令 第207號로 「辯護士法」이 公布되었다. 이 法은 辯護士들이 反對하여 온 大法院長의 朝鮮辯護士會長職 兼職을 削除하였고 辯護士會를 地方辯護士會와 그 聯合會로 變更하였으며 大學의 法學教授에게 司法部長의 認可를 얻어 辯護士登錄을 할 수 있는 規定을 두었다. 이 法에 따라 即刻 서울을 비롯한 各地方 辯護士會와 朝鮮辯護士聯合會가 創設되었다.

### (4) 政府樹立後의 辯護士制度

#### (가) 辯護士法

大韓民國의 政府樹立後 1948年 11月 7日 法律 第63號로 「辯護士法」이 制定 公布되어 公布日부터 施行되었다. 이 辯護士法이 現行의 辯護士法으로서 그 후 다섯 차례의 一部改正을 거쳐 現在에 이르고 있다.

이 法은 日帝下의 朝鮮辯護士令의 體系와 內容을 거의 그대로 踏襲하고 있는 바, 朝鮮辯護士令이란 이미 본래로 1933年에 制定公布되어 1936년부터 施行된 日本辯護士法을 그 母法으로 하여 制定되었던 것이므로 現行 辯護士法 역시 1933年의 日本辯護士法의 태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 制定이후 1973年 1月 25日 當時의 非常閣議에 의한 大幅改正을 포함하여 1973年 12月 20日의 改正까지 5次의 一部改正이 있었으나 法律體系의 全面的인 整備나 辯護士制度의 本質과 現代社會의 實狀에 맞는 改正이 아니라 오히려 辯護士와 辯護士團體에 대한 行政權力의 監督權만을 強化하는 方向의 改正만이 거듭되어 現行辯護士法은 民主國家의 辯護士法으로서는 合當하지 못할 뿐더러 辯護士制度의 維持發展에 큰 障礙要素로 남아있는 것이다.

最近 그 全面改正의 움직임이 활발한 것은 이 때문이며, 日本에서조차 1933年法은 1949年의 새로운 辯護士法의 制定으로 廢止된지 오래인 것이다.

(나) 其他 法律

그밖에 辯護士資格 取得에 관한 特例를 규정한 「軍法務官任用法」(1952. 4. 24. 法律 第243號)이 있고, 辯護士의 業務 등에 관한 特別法으로서 「簡易節次에 의한 民事論爭事件處理特例法」(1970. 12. 31. 法律 第2255號)이 있다.

前者는 軍法務官銓衡試驗制(改正後에는 任用試驗制)를 두어 이 試驗合格者에게 辯護士資格을 賦與하게 하여 한 때 軍法務官出身 辯護士數가 全體 辯護士의 過半數에 達할 정도로 많은 辯護士를 만들어 냈으며, 後者는 大型화된 公證認可合同事務所를 誕生시켜 辯護士의 公證業務兼業의 길을 열어 놓았다.

#### 4. 現在의 韓國辯護士制度

##### (1) 辯護士의 使命과 職務

###### (가) 辯護士의 使命

現行의 辯護士法 第1條는 辯護士는 基本의 人權을 擁護하고 社會正義를 實現함을 使命으로 한다고 明示하고, 또한 이 使命에 基하여 그 職務를 誠實히 遂行하고 社會秩序의 維持 및 法律制度의 改善에 努力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第1條는 1973年 1月 25日 改正된 것으로서 改正前에는 「本法은 辯護士制度를 確立함을 目的으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때까지 各地方辯護士會의 會則에는 辯護士會의 使命을 民主的 基本秩序의 確立이라 規定하였었다.

###### (나) 辯護士의 職務

辯護士는 當事者, 關係人의 委囑 또는 官廳의 選任에 의하여 訴訟에 관한 行爲 기타 一般法律事務를 行함을 職務로 한다(第2條). 모든 訴訟事務와 一般法律事務가 辯護士의 職務範圍에 속함을 明示한 것이다. 따라서 一般法律事務 가운데 稅務特許 등 特定한 法律事務만을 行하는 稅務士나 辯理士 또는 司法書士 등의 職務 역시 辯護士 固有의 職務領域에 속함은 勿論이다.

辯護士는 또한 公證認可合同法律事務所의 構成員이 되어 公證業務를 行할 수 있다.

## (2) 辯護士의 資格과 登錄

### (가) 辯護士의 資格

司法試驗에 合格한 者와 判事·檢事의 資格이 있는 者가 辯護士의 資格이 있다(第3條). 그밖에 軍法務官任用法에 정한 軍法務官도 辯護士資格이 있으나 軍法務官任用試驗과 그 實務考試에 合格하여 軍法務官으로 任用된 사람은 服務年限 10年未滿에 轉役하면 資格을 喪失한다.

또한 辯護士도 公務員에 準하는 缺格事由가 있으면 辯護士資格이 없다(法第5條).

### (나) 辯護士의 登錄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라도 辯護士로서 業務를 開始하자면 法務部에 備置한 辯護士名簿에 登錄하여야 하고(第7條), 그 登錄은 入會코자 하는 辯護士會를 經유하여 法務部長官에게 登錄請求書를 提出하여야 한다(第8條). 이처럼 辯護士의 登錄業務自體를 法務部長官이 管掌하고 있다.

여기서 特記할 것은 判事, 檢事 등 辯護士 資格있는 者라도 在職期間 通算 15년에 未達하면 辯護士業務開始申告前 2年以內的 勤務地 管轄區域안에서는 退職日부터 3年間 開業할 수 없다는 開業地 制限規定이 1973年 1月 23日 改正으로 新設되었다는 점이다(第8條 第5項).

### (다) 外國人 辯護士

外國人 辯護士는 法務部長官의 資格認可와 國際法上的 互惠原則에 따른 開業許可를 얻어 大韓民國에서 開業할 수 있다(第6條).

## (3) 辯護士의 權利와 義務

### (가) 辯護士의 權利

辯護士의 權利에 관하여 辯護士法에 직접 規定한 것은 없고 各種의 訴訟法規 기타 單行法令에서 규정하고 있다.

결국 辯護士法 第2條에 정한 職務를 行할 權利가 있다고 把握하면 좋을 것이다.

辯護士는 그 權利에 속하는 職務를 行하기 위하여 法律事務所를 開設할 수 있다(第13條).

### (나) 辯護士의 義務

辯護士法은 辯護士가 遵守하여야 할 最少限도의 義務規定을 두고 있다.

品位維持와 會則遵守義務(第14條 第1項), 職務上 秘密의 守護義務(同第2項), 命令囑託事項의 處理義務(第15條), 事件受任의 制限(第16條), 係爭權利의 讓受禁止(第17條 第1項), 過當報酬의 收受와 眞實掩蔽의 禁止(同第2項), 瀆職行爲의 禁止(同第3項), 非辯護士와의 提携禁止(同第4項), 兼職 및 營業 등의 制限(第18條) 등이 그것이다.

## (4) 辯護士의 懲戒

辯護士의 懲戒權은 法務部長官이 掌握하고 있다(第4章). 大韓辯護士協會長은 다만 懲戒

開始申請權만 있고 所屬辯護士로서는 檢察總長에게 懲戒에 관한 申告만 할 수 있을 뿐이다 (第20條).

辯護士法 또는 辯護士會의 會則違反行爲가 懲戒事由가 되며, 懲戒에는 譴責, 3萬원 以上の 過怠料, 3年以下の 停職과 除名이 있고, 懲戒節次에는 관하여는 檢事懲戒法이 準用된다.

(5) 辯護士會와 大韓辯護士協會

辯護士會는 辯護士의 品位保全과 辯護士事務의 改良 進歩를 圖謀하기 위한 目的으로 地方法院의 管轄區域마다 設置하여야 하는 辯護士의 團體로서, 辯護士의 加入이 強制되는 強制團體이고, 大韓辯護士協會는 法律學의 發達, 司法事務, 法律事務의 刷新改善, 辯護士의 品位保全과 國際的 親善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組織된 各地方辯護士會의 聯合團體이다(第5章과 第6章).

어느 團體나 法人으로서 會則의 制定과 改正에는 法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하며, 1年任期의 會長, 副會長, 總務, 財務의 任員과 總會 常任委員會 등을 두게 되어 있다.

(6) 辯護士 및 辯護士團體에 대한 監督

모든 辯護士와 辯護士團體는 法務部長官의 監督을 받는다(第36條). 法務部長官은 辯護士名簿를 備置하여 登錄事務를 管掌하고 辯護士의 開業과 休業 등의 申告를 받으며, 開業申告와 轉會申告를 받을 때 開業地를 指示할 權限이 있고, 懲戒委員會의 當然職委員長으로서 辯護士에 대한 懲戒權을 행사하며, 公訴가 提起된 辯護士에 대한 業務停止命令權限을 갖고 있다.

또한 法務部長官은 辯護士會나 辯護士協會의 設立認可權과 會則의 制定 및 變更認可權이 있고 總會의 日時, 場所와 議題 등은 물론 總會의 決議와 任員의 就任이나 退任의 申告를 받으며 總會의 臨席 등 權限이 있을 뿐만 아니라 會議의 議事를 停止시키거나 決議를 取消할 수 있는 權限까지 있다.

이들 法務部長官의 監督權의 內容은 몇 차례의 辯護士法改正을 통하여 점차 強化되어 왔음은 既述한 바이다.

(7) 法律事務取扱團束

辯護士法에는 非辯護士의 法律事務取扱의 禁止와 그에 대한 處罰規定도 마련되어 있다.

5. 結 論

(1) 이상으로 지금껏 簡略하게 韓國辯護士制度의 沿革과 現行制度를 辯護士法制를 中心으로 살펴보았다. 이기에서 分明하여진 것은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辯護士法制는 辯護士制度의 본래의 本質에서 많은 거리를 두고 있다는 事實이다.

辯護士制度 역시 한 나라의 文化의 產物이며, 民主主義와 法治主義가 具現되는 民主社會

안에서만 發展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더라도 法制 自體가 制度의 本質에 맞게 整備되어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辯護士나 辯護士團體가 그 制度 안에서 本來 주어진 使命과 職務에 充實할 것을 期待할 수는 없을 것이고, 나아가 制度의 發展을 期約하기는 더욱 어려운 터이다.

따라서 現行 辯護士法の 改正은 時急한 當面課題이다.

그러나 法の 改正만으로 辯護士制度가 發展될 수는 결코 없는 일이다. 진정한 制度의 發展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辯護士들 스스로가 辯護士職이란 尊嚴이나 榮達의 手段이 아니고 公共性을 지닌 高貴한 法律專門職이라는 分명한 自覺과 認識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時代의 發展에 對應할 能力을 기르고 맡겨진 職分을 合理的이고 效果的으로 遂行할 態勢를 갖출 수 있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이에, 그동안 여러 分野에서 論議된 바를 종합하여, 韓國辯護士制度의 바람직한 將來를 위한 몇가지 提案을 紹介한다.

무엇보다도 첫째로는 이미 본대로 辯護士法の 改正이고, 둘째는 法曹 一元화와 法曹人口 擴大, 셋째는 職域擴大와 事務所의 大型化이다.

## (2) 辯護士法の 改正

現行 辯護士法은 日帝植民統治時代의 遺物로서, 時急하게 全面改正되어 辯護士 地位와 職務의 獨立과 自由가 保障되고 辯護士團體의 自律과 自治制가 實現되어야 할 것이다. 이점 詳論의 必要가 없을 것이다.

## (3) 法曹一元화와 法曹人口擴大

辯護士가 司法機關의 一部로서 法院, 檢察과 더불어 法曹職들이 相互有機的인 協力を 통하여 司法權의 獨立과 法曹文化의 發展을 期하더라도 法曹一元화가 實現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는 法曹人口 특히 辯護士人口의 底邊擴大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辯護士가 判事, 檢察의 終着驛이 아니라 始發驛이 되어야 할 것이고, 人口의 增加와 社會規模의 擴大에 따르는 需要에 相應하기 위하여서나 辯護士團體가 明實相符한 壓力團體가 되기 위하여서도 辯護士數의 增加가 切實하게 要請된다.

勿論 辯護士資格取得試驗도 司法試驗으로 單一化하여 우수한 人力을 確保하여야 할 뿐 아니라 辯護士再教育制度를 確立하여 높은 資質을 維持시킨다는 前提는 必須的이다.

다만, 辯護士數의 增加가 必要하다고는 하더라도 그 適正數는 우리나라의 경우 法律事務가 辯護士의 獨占事務가 아니고 司法書士, 稅務士등 多元化되어 있는 實情과 人口 및 經濟規模 등을 綜合적으로 考慮하여 決定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와 實情이 비슷한 日本水準(人口比例水準)을 넘어서는 안될 것이다.

## (4) 職域擴大와 事務所大型化

종래 韓國의 辯護士는 訴訟事務에만 置重하여 소위 法廷辯護士로 安住하여 왔는데, 그것은 辯護士人口가 國民 4萬 내지 5萬名 當 1人인 可謂 獨寡占時代에나 合當한 것이지 앞으로



로 必然的으로 辯護士人口가 增加하게 되면 經濟와 社會의 發展에 따라 法律問題가 專門化하고 豫防法學的 活動의 重要性에 強調되고 需要가 增大되면 도저히 法廷辯護士로 安住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辯護士는 民刑事 訴訟事件에 執着하지 말고 날로 늘어나는 貿易去來, 外資導入, 海上運送, 保險, 勞動, 租稅, 公害, 消費者保護 등 제반 法律問題로 점차 그 職域을 擴大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職域의 擴大는 또한 必然的으로 法律事務所의 專門化와 分業化 및 大型化를 促求하게 마련이다.

중래 辯護士들이 法廷辯護士로 安住하다 보니 法律事務所 역시 個人事務所의 形態였던 것이나 公證業務의 兼業을 계기로 하여 合同法律事務所가 全國에 걸쳐서 어느 정도 定着되고 있는 터이므로 이 合同事務所運營의 經驗을 살려 요즘 論議가 잦은 法務法人으로의 發展이 期待되는 바다.

勿論 全國에 걸쳐서 辯護士總數의 4分の 1이 넘는 270名의 辯護士가 構成員이 되어 있는 57個所 가량의 合同法律事務所는 그 運營形態도 多樣하고 大部分 公證事務所가 合同으로 運營되고 있는 실정이고, 法務法人으로 法人化합에는 訴訟事件이외의 一般法律事務의 比重이 높아진 것이 당연한 前提로서 要求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法務法人으로의 發展은 專門化 分科化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辯護士의 品位保全과 後進辯護士의 教育과 訓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類似職種인 醫師들의 경우를 보면 醫療法人에 民法上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이 準用되는 탓으로 收入金의 配當이 不可能한 短點에도 不拘하고 新設되는 綜合病院이나 病院가운데 상당수가 醫療法人의 形態이며, 公認會計士의 경우 全國 876名의 專業開業公認會計士 가운데 629名이 16個의 會計法人을 構成하고 成功的으로 運營하고 있는 실정인 바, 法務法人의 경우에도 좋은 參考가 될 것이다.